

평창군환경기본조례안

의안번호	127
------	-----

제출년월일 : 2004. 11. 26.

제출자 : 평창군수

1. 제안이유

날로 훼손되어가고 있는 우리군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환경보전을 위한 주체별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을 종합적이며 계획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환경관련조례의 근간이 되는 「평창군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군수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한 분야별 책무를 규정(안 제4조)
- 나. 우리군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위한 평창군환경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안 제8조)
- 다. 군의 환경여건에 적합한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지역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시 지역배출허용기준을 설정 하도록 함. (안 제11조)
- 라. 환경보전 및 환경개선활동에 공헌한 군민, 단체에 표창장 및 부상 · 시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안 제14조)
- 바. 환경단체나 연구기관이 행하는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 · 운영·조사·연구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5조)
- 사. 환경보전시책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기관인 평창군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안 제18조)
- 아.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개인 등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를 제공토록 함(안 제25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관계부처승인 : 해당없음
- 라. 입법예고 : 평창군공고 2003-307(04.10.27)

평창군환경기본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환경보전을 위한 주체별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며 계획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제1항

제1조 제2항

제2조(기본이념) ①군은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군·사업자·군민은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조성하도록 노력하고 지구의 환경상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구한다.

③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 하며, 군민으로 하여금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한다.

④군은 모든 시책을 추진함에 제1항 내지 제3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 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훼손”이라 함은 야생동·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 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6.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 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7. “지구환경보전”이라 함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해양 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 행위를 말한다.

8. “사업자”라 함은 환경오염원을 생산하는 자 또는 생산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제4조(군의 책무) ① 군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험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다음 각호의 환경보전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 수질, 토양 등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동·식물의 보전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처리·감량에 관한 사항
 6.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7.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8. 환경보전을 위한 군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9. 환경전문인력의 양성과 교육에 관한 사항
 10. 기타 환경보전 및 환경훼손과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 ② 군은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 및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환경오염물질 및 환경오염원의 원천적인 감소를 통한 사전예방적 오염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군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군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6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군민은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를 가진다.

② 모든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군이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군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군민은 생활환경을 깨끗이 유지하고, 폐기물의 자원화 및 음식문화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 군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에는 현장에서 제도하거나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3. 군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군의 환경보전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4. 군민은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7조(교육기관의 역할 등) ① 교육기관은 자라나는 청소년이 환경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환경관련단체는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하여 환경오염감시, 홍보 등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 2 장 환경보전시책

제8조(환경보전계획 수립)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평창군환경기본계획(이하 “환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여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2. 환경보전 목표 및 시책방향
3.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단계별 사업계획
4.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5. 소요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계획

③ 군수는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군민, 평창군환경보전자문위원회 및 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군의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환경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군, 군민, 사업자는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자연환경은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자연의 이용과 개발이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 ③ 군수는 산, 하천, 호소, 습지, 공원, 녹지, 계곡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지구환경의 보전) 군수는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예방 등 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환경기준의 설정 등) ① 군수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군의 환경여건에 적합한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이의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역 여건을 감안한 지역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제12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군수는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오염 방지 시설 등 공공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촉진) ① 군수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군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재활용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타 사업을 실시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환경보전 및 개선활동에 대한 포상 등) 군수는 환경보전·생활환경 개선 활동에 공헌한 군민, 단체 등에 대하여는 평창군포상조례에 의거 표창장 및 부상 수여 또는 시상금을 지급하고, 환경오염신고자에 대하여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재정지원) 군, 군민, 사업자 또는 이들이 함께 조직하는 환경단체나 연구 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① 군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는 오염방지 비용뿐만 아니라 그 피해복구에 대한 의무를 진다.

제17조(교류·협력) 군수는 지구환경 보전 및 지역 환경보전을 위하여 국제적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와 정보·기술의 교류 등 환경보전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 3 장 평창군환경보전자문위원회

제18조(설치) 군은 환경보전시책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평창군환경보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9조(구성·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군관계공무원, 군의회의원, 환경보전 및 국토·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기간으로 한다.

제2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환경관련 조례에서 정한 환경관련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환경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평창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4 장 환경조사 및 정보의 공개 등

제24조(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 ① 군수는 환경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측정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내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내용과 조치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환경질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군민,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및 환경보전에 관한 각종 정보의 수집과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역의 자원이 환경친화적으로 이용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연구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5조(정보의 제공 등) ①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과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의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내용 등을 군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매2년마다 환경백서를 발행할 수 있다.

제26조(군민의 참여) ①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결정·집행 등의 과정에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환경보전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② 군수는 민간인을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하여 환경감시활동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환경교육·홍보등의 진흥) ① 군수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기타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환경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환경교육·홍보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 단체 및 사업자가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의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령 발췌

□환경정책기본법 제1조(목적)

이 法은 環境保全에 관한 國民의 權利·義務와 國家의 責務를 명확히 하고 環境政策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環境污染과 環境毀損을豫防하고 環境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國民이 건강하고 快適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目的으로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環境의 質的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快適한 環境의 造成 및 이를 통한 人間과 環境間의 調和와 균형의 유지는 國民의 건강과 文化的인 生活의 享有 및 國土의 보전과 恒久의in 國家發展에 必須不可缺한 要素임에 비추어 國家·地方自治團體·事業者 및 國民은 環境을 보다 良好한 상태로 유지·造成하도록 노력하고, 環境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環境保全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地球의 環境上 危害를豫防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구함으로써 현재의 國民으로 하여금 그 惠澤을 널리 享有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世代에게 繼承될 수 있도록 함을 이 法의 基本理念으로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정의)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環境”이라 함은 自然環境과 生活環境을 말한다.
2. “自然環境”이라 함은 地下·地表(海洋을 포함한다) 및 地上의 모든 生物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非生物의in 것을 포함한 自然의 상태(生態系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改正 99. 12. 31>
3. “生活環境”이라 함은 大氣, 물, 廢棄物, 驚音·振動, 惡臭, 日照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環境을 말한다.
4. “環境污染”이라 함은 事業活動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大氣污染, 水質污染, 土壤污染, 海洋污染, 放射能污染, 驚音·振動, 惡臭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環境에 被害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 4의2. “環境毀損”이라 함은 野生動植物의 濫獲 및 그棲息地의 파괴, 生態系秩序의攪亂, 自然景觀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自然環境의 본래적 機能에 중대한 損傷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改正 99. 12. 31>
5. “環境保全”이라 함은 環境污染 및 環境毀損으로부터 環境을 保護하고 汚染되거나 훼손된 環境을 개선함과 동시에 快適한 環境의 상태를 유지·造成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國家는 環境污染 및 環境毀損과 그 危害를豫防하고 環境을 적정하게 管理·보전하기 위하여 環境保全計劃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責務를 진다.
- ② 地方自治團體는 管轄區域의 地域의 特性을 고려하여 國家의 環境保全計劃에 따라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計劃을 수립하여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사업자의 책무)

事業者는 그 事業活動으로부터 起起되는 環境汚染 및 環境毀損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방지함에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하며,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環境保全施策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責務를 진다.

□환경정책기본법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모든 國民은 건강하고 快適한 環境에서 생활할 權利를 가지며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環境保全施策에 협력하고 環境保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의4(자원의 절약 및 순환적 사용 촉진)

-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 및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원의 재사용·재활용 등 자원의 순환적 사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사업자는 경제활동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환경기준의 설정)

- ①政府는 國民의 건강을 保護하고 快適한 環境을 造成하기 위하여 環境基準을 設定하여야 하며 環境與件의 變化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環境基準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③서울特別市·廣域市·道(이하 “市·道”라 한다)는 地域環境의 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市·道의 條例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環境基準보다 擴大·強化된 별도의 環境基準(이하 “地域環境基準”이라 한다)을 設定할 수 있다.
- ④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地域環境基準이 設定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環境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4(시·군·구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등)

- ①市長·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 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國家環境綜合計劃과 中期計劃 및 市·道環境計劃에 따라 管轄 區域의 地域的 特性을 고려하여 당해 市·郡·區의 環境保全計劃(이라 “市·郡·區環境計劃”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市長·郡守·區廳長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市·郡·區環境計劃을樹立하는 경우에는 管轄 市·道知事を 거쳐 地方環境官署의 長과 협의한 후 環境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립된 市·郡·區環境計劃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地方環境官署의 長 또는 市·道知事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影響權별 環境管理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市長·郡守·區廳長에게 市·郡·區環境計劃의 變更을 要請할 수 있다. [本條新設 2002.12.30]

□환경정책기본법 제15조(환경상태의 조사·평가 등)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상시 調查·評價하여야 한다.

1. 自然環境 및 生活環境現況
2. 環境污染 및 環境毀損實態
3. 環境污染源 및 環境毀損要因
4. 環境의 質의 變化
5. 그 밖의 國家環境綜合計劃등의 樹立·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調查·評價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한 研究·監視·測定·試驗 및 分析體制를 유지하여야 한다.<改正 2002.12.3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調查·評價 및 그 적정한 실시를 위한 研究·監視·測定·試驗 및 分析體制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新設 2002. 12.30>

□환경정책기본법 제15조의3(환경정보의 보급 등)

환경부장관은 모든 국민에게 환경보전에 관한 지식·정보를 보급하고, 국민이 환경에 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6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등)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環境保全에 관한 教育과 弘報 등을 통하여 國民의 環境保全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함과 아울러 國民 스스로 環境保全에 참여하고 日常生活에서 이를 實踐할 수 있도록 필요한 施策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7조(국제협력 및 지구환경보전)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國際協力を 통하여 環境情報와 技術을 交流하고 專門人力을 養成하며, 地球全體의 環境에 영향을 미치는 氣候變化, 오존층의 파괴, 海洋污染, 砂漠化 및 生物資源의 감소 등으로부터 地球의 環境을 보전하기 위하여 地球環境의 監視·觀測 및 보호에 관하여 상호 協力하는 등 國際的인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환경보전시설의 설치·관리)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大氣污染의 低減을 위한 綠地帶, 廢·下水 및 廢棄物의 處理를 위한 施設, 驚音·振動 및 惡臭의 방지를 위한 施設, 野生動·植物 및 生態

系의 보호·復元을 위한 施設 등 環境保全을 위한 公共施設의 設置·管理를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24조(자연환경의 보전)

國家와 國民은 自然環境의 保全이 人間의 生존 및 생활의 基本임에 비추어 自然의 秩序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29조(분쟁조정)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環境污染 또는 環境毀損으로 인한 紛爭 기타 環境關聯紛爭이 발생한 경우에 그 紛爭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解決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35조(調査研究 및 技術開發에 대한 財政支援)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環境保全에 관련되는 學術調查·研究 및 技術開發에 필요한 財政支援을 할 수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환경보전자문위원회)

① 環境保全에 관한 技術的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環境部長官所屬下에 中央環境保全諮詢委員會【環境保全諮詢委員會】를 두고, 市·道知事所屬下에 市·道環境保全諮詢委員會를 두며, 市長·郡守·區廳長所屬하에 市·郡·區環境保全諮詢委員會를 둘 수 있다.<改正 2002.12.31>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中央環境保全諮詢委員會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하며, 市·道環境保全諮詢委員會 및 市·郡·區環境保全諮詢委員會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市·道 및 市·郡·區의 條例로 정한다.<改正 2002.12.31>